

통일공대 신설학과 선거시행세칙

2021. 05.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통일공대 신설학과 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통일공대 신설학과 학생회장 선거(이하 선거)의 민주적이며 공정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1항 해당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2항 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는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선거권 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피선거권)

1항 해당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2항 학과 전체 재학 인원의 2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은 다수의 후보자에 대해 복수 추천이 가능하고, 한 후보에 대한 복수 추천은 불가하다.

제6조(후보자등록)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 마감일 18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① 재학 증명서
- ② 5조 2항에 의한 선관위의 도장이 찍힌 추천서
- ③ 대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명단과 재학 증명서
- ④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 ⑤ 후보자 사진(후보자 공고용 선관위 이메일로 제출)

제7조(입후보자 심사)

1항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제5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한다. 자격 미달 시 등록을 거부한다.

2항 입후보자가 제6조의 구비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한다.

제8조(사퇴규정)

1항 선관위와 학교 간부(정(부)학생회장, 부장, 차장급 이상) 및 대표자 중 선거 입후보, 대표/투표 참관인, 선거운동원을 하려는 자,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항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서와 사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후보자 최종 등록 : 물미팅)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대표 참관인으로 하며,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 ② 선거 시행세칙 검토
- ③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3장 선거

- 선거일 -

제10조(선거일)

1항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선거운동 -

제11조(선거운동)

1항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2항 추천 기간 중 다음과 같은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① 특정 단체를 지칭하지 않는 범위 내의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 ② 추천서는 선관위에서 추천 시작 당일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제12조(선거운동 기간)

1항 선거운동 기간은 롤미팅 직후부터 선거 전일 24:00까지 이다.

제1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선관위원, 공대 학생회 집행부, 각 학과/학부 학생 정/부회장, 각 학과/학부 집행부, 각 학과/학부 학년대표

2항 재학 중이 아닌 자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4조(위상) 통일공대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회칙 및 세칙,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하는 선거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5조(목적) 신설학과 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1항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2항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항 회칙, 세칙, 규정 및 각 선거운동 본부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시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1항 공과대학 학생 정/부회장과 공과대학 소속 각 학부, 학과 정/부회장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은 각 학부, 학과별로 하나만 갖는다.

2항 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정회장이, 부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부회장으로 한다.

3항 필요 시 선관위 산하 집행국 및 집행위원을 둔다.

4항 공과대학 학생 정/부회장은 사퇴 시 선관위원직을 위임할 수 없으며 해당 공석은 성원에서 제한다.

제18조(소집, 개최 및 의결)

1항 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항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 시 즉시 개최한다.

3항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참관인

- 투표 참관인 -

제19조(통칙)

1항 투표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2항 각 후보자는 각 투표소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자격)

1항 참관인은 재학생으로 한다.

2항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와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투표 2일째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 첫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제21조(이의제기)

1항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투표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항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규제조건)

1항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2항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선관(부)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까지 투표소에서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대신하여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없다.

3항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①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②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

우

③ 이외의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4항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23조(기타사항)

1항 참관인들은 투표 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를 기각한다.

2항 참관인은 투표 당일 선거시작 전까지 선관위 와 함께 투표함(*전자투표 시 전자투표기기)을 운반한다.

3항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 제기할 경우 선관위원장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4항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개표 참관인-

제24조(역할)

1항 각 후보의 대표 참관인은 투표 2일째 12시까지 개표 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개표 참관인은 개표 시작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3항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 득표의 계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개표 참관인의 교체는 선관위원장의 허락 하에 한다.)

제6장 이의제기

제25조(이의제기)

1항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개표 참관인과 대표 참관인, 후보만이 할 수 있다.

2항 선거운동원은 대표 참관인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제기의 처리)

1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항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관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처리한다.

3항 선관위는 이의제기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항 이의제기 내용, 답변 내용은 답변한 직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27조(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29조(징계의 통보)

1항 시정 명령과 주의를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2항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4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3항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를 12시간 이내에 경고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판에 게시한다.

4항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①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공개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 판에 공개
- ② 경고 2회 - 경고일 하루(24시간)의 개별 강의실 유세 금지, 공동유세 시 유세시간 20분 감축
- ③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제8장 투표

- 총칙 -

제30조(투표일과 투표시간)

1항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한다.

2항 투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3항 2일 차 17시 30분에 투표율이 45% 이상인 경우 투표마감시간으로부터 30분 연장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시 하지 않는다.)

제31조(투표용지, 투표구 및 투표소)

1항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한다.

2항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직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3항 투표소에는 선관위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제32조(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 ① 학생증
- ② 국가인정 자격증
- ③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교학과나 과사무실에서 학번대조가 가능한 자, 참관인과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공인하는 자)

제33조(투표절차)

1항 선거권자는 자신이 속한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2항 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① 선관위의 신분확인
- ② 선거인 명부 확인
- ③ 투표용지 배부
- ④ 투표

제34조(투표소에서의 질서)

1항 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2항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항 선거운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단, 징계의 종류는 선관위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 투표함의 이송과 보관 -

제35조(투표함 이송)

1항 투표함은 투표 시작 30분 전에 선관위원과 각 대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에 자물쇠를 채우고 투표구로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이송한다.

제36조(투표 마감 후 이송)

1항 투표가 끝난 후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투표함을 봉하고 참관인이 확인한 후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실로 이송한다.

2항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물품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재한 선거인 명부
- ② 남은 투표용지
- ③ 제반 기표 용품

제37조(투표함의 보관)

1항 투표함은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항 선관위실에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

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9장 개표

- 총칙 -

제38조(개표시간) 개표는 투표 종료일 이내 선관위가 정한 시간에 한다.

제39조(통칙)

1항 개표는 선관위 위원만이 할 수 있다.

2항 표의 유효, 무효표 및 특정 후보의 득표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3항 전자투표 시 개표는 전산으로 한다.

제40조(개표장)

1항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2항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3항 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제41조(개표소)

1항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만 한다.

2항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과 개표 참관인만 있을 수 있다.

3항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제42조(개표절차)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① 투표인 수 공고
- ② 투표함 개봉
- ③ 개표
- ④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⑤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 ⑥ 현황판에 기재

제43조(기권 투표)

1항 기권 투표는 회원의 권리로서 투표 시 보장받아야 한다.

2항 투표용지(전자투표 및 종이투표)에는 반드시 기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권란을 만들어야 한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시 하지 않는다.)

3항 기권표는 무효표와 구분된다.

제44조(무효투표)

1항 기계적 오류 또는 중복투표 등 선거 과정에서 생긴 무효표는 선관위가 표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2항 표 처리에 대한 논의 결과는 논의가 끝난 후 즉시 공지한다.

3항 종이투표로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②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③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④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4항 종이투표의 경우 제44조 3항 이외의 경우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선관위가 결정한다.

5항 종이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의 경우 무효표 수와 무효표로 처리된 이유, 무효표 사진 등을 공개한다.

6항 세척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의 문제가 발생한 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45조(효력)

1항 한 투표함에 5%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처리한다.

2항 전체적으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 자체가 무효이다.

3항 전체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분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할 수 있고, 전체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선관위의 논의 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4항 1위와 차순위 간의 득표차가 기권표 수와 무효표 수의 합 이하일 경우 재투표를 한다.

제10장 당선

제46조(당선의 기준)

1항 전자투표의 경우 당선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차이는 무효표와 기권표의 합보다 커야한다.)

2항 종이투표의 경우에도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차이는 무효표와 기권표의 합보다 커야 한다.)

3항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는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를 득표해야 하며, 찬성과 반대의 득표 차는 기권표와 무효표의 합보다 커야 한다.

제47조(당선공고)

1항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2항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3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 위원 1/2 이상으로 한다.)

4항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제11장 재투표 및 재선거

제48조(재선거) 제45조 2, 3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입후보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제49조(결선투표) 제45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 1위 득표자와 차 순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를 제50조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무효표와 관계없이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제50조(재투표, 결선투표절차)

1항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2항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제12장 부칙

제51조(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제52조(선거시행 세칙의 효력 발생) 본 시행세칙은 공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2021년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